

화 해 계 약 서

임대인 ○○○을 「갑」, 임차인 ○○○을 「을」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화해계약서를 작성한다.

- 제1조(임대차계약의 종료) 갑 소유의 수원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 소재 주상 복합 건물의 1층 부분(갑과 을간의 20○○년 ○월 ○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 조 기재한 부분)에 대한 을의 임차기간은 그 만료일인 20○○년 ○월 ○일에 종료되었음을 당사자들은 확인한다.
- **제2조(유예기간)**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가옥의 인도를 20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유예하고, 을은 같은 날에 본 건 가옥을 인도한다.
- 제3조(유예기간중 사용료) 위 인도유예기간 중 을은 갑에게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본 계약월의 다음달부터 매월 15일에 금〇〇〇원을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.
- 제4조(유예기한의 이익상실)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제2 조 인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본 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갑에게 인도한다.
 - 1. 제3조의 손해금의 지급을 ○회 이상 게을리 했을 때
 - 2. 본 건 가옥을 ○○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한 때
 - 3. 본 건 가옥의 원상태를 변경할 때
 - 4. 본 건 가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점유 이전했을 때(이유 불문)
 - 5. 을이 사용한 수도 · 전기 · 가스요금 등 공과금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
- **제5조(합의관할)** 갑과 을은 본 건 합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○○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기로 한다.

이상과 같은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1통씩을 보관한다.

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임	주 :	소					
대 인	성 1	명	인	주민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
임 차	주 :	소					
사 인	성	명	인	주민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
입 회 인	주 :	소					
	성 1	명	ଚ୍ଚ	주민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